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03**

제출년월일: 2010. 12.

제 출 자:중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 징수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수수료 징수기준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 정비(안 별표 1)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 1건 3,000원 → 800원
- 나. 수수료 징수기준 용어 정비
 - 연장 → 갱신 또는 기간연장
 -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 → 칼라발급
- 다. 별표 1 구분 란의 업무별 분류 정비
 - 국·공유재산 관련 지방세에 관한 증명에서 삭제하고 재산관리 관계로 신설 재분류

3. 근거법규

- 가.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 나.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 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관련부처 승인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사항 : 2010. 11. 1 ~ 11. 20(의견 없음)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 및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준	수수료(원)	비고
마. 지방세에 관한 증명			
(1)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	1통	800원	
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1) 두기이용계하하이 사	1필지	1,000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칼라발급	1,500	
(2) 관할 시・군・구가 아닐 경우	1통	2,000	

별표 1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준	수수료(원)	비고
마. 지적관계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	
(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개인	1건	20,000	
법인	1건	30,000	
(3)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1건	800	
카. 재산관리관계			
(1) 국·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 신청에 관한 증명	1통	300	
(2) 공유재산 대부(신규)신청	1건	5,000	
(3) 공유재산 대부(연장) 신청	1건	3,000	
(4) 국유재산 계속대부 또는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	1통	30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6 (제135회-본회의제3차부록)

신급	구조문	대	[범	丑
<u> </u>	<u> </u>	- 1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별표 1】			
제증명 등 수	수료			제증명 등 수수료			
구분	기준	수수료(원)	비고	구분	기준	수수료(원)	비고
1. 증명 등				1. 증명 등			
마. 지방세에 관한 증명				마.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국·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신청에 관한 증명	<u>1통</u>	<u>300</u>		<삭 제>			
(2) 공유재산 대부(신규) 신청	<u>1건</u>	<u>5,000</u>		<삭 제>			
(3) 공유재산 대부(연장) 신청	<u>1건</u>	<u>3,000</u>		<u><삭 제></u>			
(4) 국유재산 계속 대부 또는 국·공유 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	<u>1통</u>	<u>300</u>		<u><삭 제></u>			
(5)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1통	800		(1)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1통	800	
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1필지	1,000			1필지	1,000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u>칼라발급</u> 또는	1,500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u>칼라발급</u>	1,500	

	도면첨부		(2) (현행과 같음)		
(2) 관할 시·군·구가 아닐 경우	1통	2,000	(2) (단 6의 (E B)		
2.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 확인 등			확인 등		
마. 지적관계			마. 지적관계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	(1) (현행과 같음)		
(2) 삭제					
(3) 삭제					
<u>(4)</u>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개인	1건	20,000	개인	1건	20,000
법인	1건	30,000	법인	1건	30,000
(5)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u>건당</u>	<u>3,000</u>	_(3)_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u>1건</u>	800
<신 설>			카. 재산관리관계		
			(1) 국·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신청에 관한 증명	<u>1통</u>	300
			(2) 공유재산 대부(신규) 신청	<u>1건</u>	<u>5,000</u>
			(3) 공유재산 대부(연장) 신청	<u>1건</u>	<u>3,000</u>
			(4) 국유재산 계속 대부 또는 국·공유 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	<u>1통</u>	<u>300</u>

의 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03)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10. 12. 1(수)

나. 제 출 자 : 중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 : 2010. 12. 6(월)

라. 위원회 상정 : 2010. 12. 14(화)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전병수)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중구 수수료 징수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수수료 징수기준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 정비(안 별표 1)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 1건 3,000원 → 800원
- 나. 수수료 징수기준 용어 정비
 - 연장 → 갱신 또는 기간연장
 -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 → 칼라발급
- 다. 별표 1 구분 란의 업무별 분류 정비
 - 국·공유재산 관련 지방세에 관한 증명에서 삭제하고 재산관리 관계로 신설 재분류

5. 관련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나.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 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6. 검토의견

- 가. 본 개정 조례안은
 - 2010. 9. 17자로『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 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이의 용어를 일부 정비하려는 것임.
- 나. 이에대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안『별표1』에 1건당 3,000원 하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 부 수수료를『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라 8 백원으로 정비하고
 - 안 『별표1』 구분 란의 『국·공유재산 관련 지방세에 관한 증명』의 삭제 와 함께 『재산관리 관계』로 신설 재분류 정비하는 것 등을 주내용으로 담 고 있음.

다. 이는

- 행정안전부에서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적용하기 위하 여 징수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7. 심사결과 : 원안가결